



라이나손보

A Chubb Company
에이스손해보험의 새 브랜드입니다.

라이나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처브그룹 컴퍼니
03156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15층

대표번호+82 2 2127 2400
고객센터1566 5800
www.chubb.com/kr

라이나손해보험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

Chubb 국내여행차박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① 판매제한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판매합니다.

가. 계약자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전자금융업자 또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 중개업자

나. 피보험자

- 상기 계약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회원 중 해당 보험서비스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신청한 자

②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 상품의 특이사항

- ① 이 상품의 보험기간(보험회사 보상책임은 지는 기간)은 2일이며,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으로 합니다.
- ②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구 분	보장명	지급사유	보험가입금액
기본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별금 (대인, 사고당 2천만원한도, 단, 스쿨존 3천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별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별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별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별금(대인)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2,000만원



라이나손보

A Chubb Company
에이스손해보험의 새 브랜드입니다.

라이나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처브그룹 컴퍼니
03156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15층

대표번호+82 2 2127 2400
고객센터1566 5800
www.chubb.com/kr

라이나손해보험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

구 분	보장명	지급사유	보험가입금액
기본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사고당)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1,000만원
기본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Ⅱ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지급(피해자 1인 기준) 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000만원 한도로 지급 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① 42일 이상 70일 미만 진단시 : 1,000만원 한도로 지급 ② 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시 : 3,000만원 한도로 지급 ③ 140일 이상 진단시 : 5,000만원 한도로 지급 다.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5,000만원 한도로 지급 ※피해자인 타인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5,000만원
기본	(자가용운전자용)벌금보장(대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재물손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벌금(대물)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500만원
기본	5대골절(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	100만원
기본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은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매사고시마다 지급, 동일한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함	30만원
기본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 보험금만을 지급	30만원
기본	무릎인대파열 및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으로 진단	50만원

구 분	보장명	지급사유	보험가입금액
	연골손상 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무릎인대파열및연골손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무릎인대파열및연골손상수술비보험금만 지급	
기본	깁스치료비(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	10만원
기본	화상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매사고시마다 지급, 동일한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함	50만원
기본	상해 응급실내원(응급)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응급환자:상해로응급실에내원하여진료를받은자중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	7만원
기본	주택내 일반가재 도난손해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일반가재)이 주택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강도 또는 절도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함(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원)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귀금속, 귀중품(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원고, 설계서, 소프트웨어 등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보상제외, 약관참조)	1,000만원

주1)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2)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① 자동차사고 벌금(대인, 사고당 2천 만원한도, 단, 스쿨존 3천만원) :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상해와 관련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2천만원(단, 스쿨존 사고의 경우 3천만원)한도로 지급합니다.
- ②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③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Ⅱ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5천만원 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 70일~139일 진단시 3천만원, 140일이상 진단시 5천만원을 한도로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자동차사고 벌금보장(대물) :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재물 손해와 관련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5백만원한도로 지급합니다.
- ⑦ 자동차사고 벌금(대인, 사고당 2천만원 한도, 단 스쿨존 3천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Ⅱ 및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보장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⑧ 주택내 일반가재 도난손해

: 손해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시가로 결정하며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 공제)

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3)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① 운전자 담보 관련 공통사항

-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 계약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운전자 및 도난담보 이외 담보의 공통사항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주택내 일반가재 도난손해의 경우

가. 보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물건(보상하지 않음)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품 및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자동차(자동 2륜차 및 자동 3륜차 포함)

나. 보상하지 않는 사유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 전쟁, 폭동, 소요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 보험의 목적이 건물 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2) 보험료 산출 예시

		(2일, 일시납)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기본계약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별금(대인, 2천만원 한도, 단, 스쿨존 3천만원)	2,0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1,0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II	5,0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별금(대물)	500만원
	5대골절(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진단비 (동일사고당 1회한)	100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	30만원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30만원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 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50만원
	킵스치료비(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10만원
	화상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	50만원
	상해 응급실내원(응급)치료비	7만원
	주택내 일반가재 도난손해	1,000만원
	보험료	1,950원

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Chubb 국내여행차박보험은 보험기간이 2일로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5. 기타 알아두실 사항

Q)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수령권자는?

A)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사망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Q)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각각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담보별로 보상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액보상담보의 경우 각각 별도로 보상하며, 실손보상담보의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예) 정액보상담보 :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등

실손보상담보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별금 등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ubb. Insured.SM